

法律의立法趣旨와 그 方向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李 建 中
〈財務部 證券保險局長〉

目 次

一. 立法趣旨

1. 火災의 頻發과 大型化
2. 民營 火災豫防研究機關의 缺如
3. 保險利用率의 低調
4. 法律制定의 必要性

二. 立法方向

1. 適用地域 및 對象建物の 選定
2. 特殊建物所有者의 損害賠償責任
3. 身體損害賠償特約付 火災保險
4. 民營 火災豫防研究機關의 設立
5. 韓國火災保險協會의 安全點檢

三. 맺는 말

一. 立法趣旨

1. 火災의 頻發과 大型化

3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實踐으로 우리 나라 經濟는 눈부신 速度의 成長을 하여 왔음

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이같은 經濟의 發展으로 우리는 物質文明의 惠澤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工場과 高層建物 그리고 各種 電氣機具·化學製品·油類 및 「가스」의 使用增加 등 文化의 利器는 우리들 生活을 便利하고 즐겁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文明의 利器는 자칫 잘 못 使用하면 우리에게 무서운 被害를 가져다 주는 原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記憶에 아직 생생한 大然閣「호텔」火災, 市民會館火災 등은 被害額이나 被害人員數에 있어서 前例가 없는 大規模 慘事였읍니다.

治安局 統計에 依하면 1963年度에는 火災發生件數가 1,904件에 人命被害 303人, 被害金額 3億 2千1百萬원이었던 것이 1971年度에는 火災發生件數가 4,412件에 人命被害 1,112人, 被害金額은 21億8千6百萬원에 達하여 이 8年間의 發生件數는 2.5倍, 人命被害 約 4倍, 被害額은 約 7倍나 늘어나 火災로 因한 被害規模가 大型化하고 있습니다.

그 原因을 檢討하여 볼 때, 예전보다 火災豫防 思想이 減退되었거나 火災에 對한 國民의 不注意가 더 增大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前述한 經濟의 發展과 文明의 利器의 使用 增加가 이같은 被害規模의 大型化를 招來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民營火災豫防研究機關의 缺如

이같이 火災의 危險과 被害規模가 大型化함에 對處하기 爲하여는 火災豫防에 關한 根本의 이고 科學的인 研究와 啓蒙 및 그 實踐이 切實함에도 우리 나라의 實情은 이를 擔當할 專門的인 機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國民들의 認識 또한 不足하여 自己의 財産을 保護하기 爲한 消防設備關係費用에 마저 인식하였던 것이 事實입니다.

3. 保險利用率의 低調

더구나 不幸하게도 災難을 當하였을 境遇에는 災害를 迅速히 復舊하고 人命被害에 對하여는 適正한 補償을 期하여야 할 것인 바, 建物所有者가 多幸히 財産이 있는 境遇에는 그 補償이 可能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義捐金이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補助에 依하여 약간의 補償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災害復舊費나 人命被害補償을 責任지는 保險制度가 있기는 하지만 그 活用도는 極히 低調하여 火災保險마저 一部企業이 金融機關의 融資와 關聯하여 半 他意的으로 加入하는 形便이었습니다.

4. 法律制定의 必要性

이와 같은 實情下에서 大然閣「호텔」과 市民會館의 慘事는 根本的인 對策의 必要性을 擡頭시켰고, 그 必要性에서 火災의 豫防과 災害의 迅速한 復舊 및 人命被害의 適正한 補償을 通하여 國民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고자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이 制定된 것입니다.

二. 立法方向

前述한 바와 같이 이 法律의 立法趣旨은 火災의 事前豫防과 災害의 迅速한 復舊 및 人命被害의 適正한 補償에 있으므로 火災豫防研究를 專擔하는 民營 研究機關을 設立하여 火災豫防研究 啓蒙活動을 하도록 하며 火災가 發生할 경우에 被害危險이 큰 建物의 消防設備 安全點檢奉仕를 實施하게 함으로서 消防設備改良에 關한 助言 및 協助(消防設備 改良資金의 融資 등도 包含)를 하도록 하여 消防設備의 改善을 誘導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奉仕의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特殊建物의 所有者에 對하여 火災保險加入을 義務化한 것입니다.

1. 適用地域 및 對象建物의 選定

「스위스」나 西獨과 같이 國民所得이 높고 社會가 安定된 先進國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州에서 火災保險加入을 全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義務化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形便으로는 國民의 保險料 負擔能力問題와 保險加入時에 實施할 消防設備에 對한 安全點檢業務를 擔當할 民營火災豫防專門機構의 業務處理能力 등 諸 問題點을 考慮하여 于先 一部地域에서만 施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그 適用對象建物도 모든 建物에 對하여 適用하지 아니하고 火災發生危險이 크고 火災發生時 人命被害危險성이 큰 高層建物, 「호텔」, 劇場, 市場, 百貨店, 學校, 綜合病院 등 特殊建物만을 對象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國民의 理解와 負擔能力이 向上되고 民營火災豫防專門機構의 安全點檢業務處理能力이 擴大되면 漸次 適用對象地域과 適用對象建物を 擴大實施하여 이 制度의 惠澤을 全國의 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特殊建物所有者의 損害賠償責任

人命被害에 對한 補償에 關하여는 民法이나 失

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損害賠償責任을 超過하여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그 建物の 火災로 他人의 身體를 死傷하게 한 때에는 輕過失이 있거나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이 法律에 定한 保險金額의 範圍 안에서 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 特例規定을 하였읍니다.

따라서 特殊建물에 火災가 發生한 경우에 被害者는 充分하지는 못하나 保險金額에 相當하는 賠償을 받게된 바, 이는 人命被害에 對한 適正한 補償을 期하므로써 社會的 安定을 圖謀하려는 이 法의 立法趣旨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3. 身體損害賠償特約付 火災保險

이 法律에 따라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加入하여야 하는 保險은 身體損害賠償特約付 火災保險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읍니다.

即, 建物の 火災時에 그 損害를 補償하는 火災保險에 身體上의 損害를 補償하는 特約을 付加한 것으로 이 特約에 따라 死亡者에 對하여는 50萬원, 負傷者는 40萬원 範圍內에서 實治療費를 支給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保險金額은 우리나라 現實에 비추어 적은 金額이므로 不滿은 있으나 保險金額을 引上할 경우에는 相對的으로 保險料가 높아지기 때문에 保險加入者의 負擔能力을 勘案하고 現在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依한 自動車保險의 保險金額이 死亡 50萬원, 負傷 30萬원 以內로 되어 있어 이와 均衡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所得水準이 向上되고 國民의 理解가 增進되면 이 保險金額은 現實에 맞는 水準의 金額으로 引上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保險의 社會保障的 性格을 勘案하여 身體損害賠償特約保險金은 이를 押留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保險金의 請求도 保險契約者가 아닌 被害者도 直接 保險會社에 請求할 수 있도록 하여 保險金의 迅速, 正確한 支給을 期하고 早速한 被害者의 安定을 圖謀코자 한 것입니다.

4. 民營火災豫防研究機關의 設立

外國에서는 民營火災豫防機構가 오래 전부터 設立·運營되고 있습니다.

그 實例를 들면 美國의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은 防災研究·啓蒙·技術「서비스」等 事業을 하고 있으며 特히 이 機構에서 만드는 防災基準은 各州에서 法規로 公布, 施行하고 있을 程度의 權威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는 研究事業外에 公設消防隊에 協力하여 消火作業까지 參與하고 있으며 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는 消火設備, 盜難警報器 및 電氣機具의 檢査等 業務를 行하며 이 機關의 頭文字인 UL은 信用을 象徵하여 이 標識가 있으면 消費者가 安心하고 이를 살 程度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英國의 LWWC, FPA, FOC 등 機構도 消火設備規則의 制定, 防火研究等 事業을 實施하고 있으며 日本의 損害保險協會는 保險會社로부터 原受保險料의 1,000분의 2를 釀出하여 消防車寄贈, 消防債引受, 消防關係融資 또는 補助, 啓蒙事業等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損害保險會社에서는 會社自體內에 技術部를 두어 研究 및 點檢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保險會社들은 아직 그 規模가 적어 獨自的으로 技術部를 運營할 能力이 없으므로 10個 損害保險會社로 하여금 共同으로 民營火災豫防研究機關인 韓國火災保險協會를 設立·運營하도록 義務化하여 保險會社도 火災豫防事業을 通하여 社會에 奉仕하고 스스로도 保險金 支給이 節約되도록 하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노린 것입니다.

이 韓國火災保險協會는 每年 保險會社에 收入되는 火災保險料의 一定率을 協會費로 出捐하여 運營토록 하였으며 그 業務는 火災豫防研究와 保險加入時 實施하는 消火設備安全點檢外에 消火設備의 改善을 目的으로 關係機關에 對한 消防車의 寄贈이나 消火設備改良資金의 貸與 또는 消防機具製造工場에의 投資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5. 韓國火災保險協會의 安全點檢

이 法律의 核心的 立法趣旨의 하나는 協會가 實施하는 消火設備에 對한 安全點檢입니다.

建物內에 裝置된 消火機具, 電氣設備, 待避施設 등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이 安全點檢은 火災危險도를 測定하여 代替 또는 改修의 必要性이 있을 때에는 이를 建物所有主에게 助言하고 危險이 深刻한 경우에는 關係機關에 그 改善를 建議하며 아울러 保險料率의 消火設備割引等級査定도 하도록 한 것입니다.

協會에서 實施하는 安全點檢은 어디까지나 民營奉仕機關으로서 助言을 하기 爲한 點檢이므로 國民들의 理解와 協助가 絶對으로 必要한 것입니다.

이 安全點檢은 一次의으로 保險加入建物에 對하여 實施하도록 되어 있으나 餘裕 力이 있는 경우에는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建物에 對하여도 奉仕하도록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三. 맺는 말

以上에서 본 이 法律의 立法方向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韓國火災保險協會를 設立하여 火災豫防研究 및 啓蒙事業을 實施하게 한다.

둘째, 韓國火災保險協會는 火災危險과 被害危險이 큰 特殊建物에 對하여 火災豫防 安全點檢을 實施한다.

셋째, 同 安全點檢을 받게 하기 爲하여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火災保險加入을 義務화한다.

넷째, 火災로 인한 人命被害를 補償토록 하기

爲하여 火災保險에 身體損害賠償特約을 附加하게 한다.

이와 같은 方向으로 立法措置를 하는 外에 政府가 取한 行政的인 補完措置의 內容은 保險加入者의 負擔輕減을 爲하여 火災保險料率을 73年 7月 1日부터 引下 實施하였으며 特히 消火設備割引率을 擴大하여 消火設備 改善를 誘導하였습니다.

同時에 이 火災保險이 法律에 依하여 義務的으로 加入하게 되어 있는 만큼 保險會社의 保險募集過程에서 惹起될지도 모르는 募集秩序의 亂란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損害保險 共同引受 窓口인 損害保險共同事務所에서 取扱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는 立法과 行政的인 措置만으로 그 成果를 期待할 수는 없습니다.

그 成果如否는 韓國火災保險協會가 實施하는 火災豫防研究 및 啓蒙事業, 그리고 消火設備安全點檢의 成果와 이에 대한 國民의 理解와 協調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特히 韓國火災保險協會는 韓國 唯一의 民營火災豫防專門機關임을 自負하고 國民에게 奉仕한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透徹한 奉仕精神과 끊임 없는 研究 努力을 繼續하여 所期의 成果를 達成하여야 할 것이며 損害保險會社들도 이 制度의 趣旨를 理解하여 協會의 活動을 積極 支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國民들도 自己의 財産을 지켜 주고 人命被害를 防止하려는 協會의 努力에 積極 呼應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法律에 對하여는 繼續 未備點을 研究 檢討하여 補完함으로서 이 制度의 向上 發展을 期할 것을 約束하는 바입니다.